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95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한민수 • 박 정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 · 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기한 · 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4조, 제30조 및제33조).

법률 제 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6항 중 "10일 이내"를 "30일 이내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30일 이내"를 "14일 이내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"을 "등에 필요한 사항은"으로 한다.

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제30조제3항 전단 중 "소관"을 "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에 따른 재검토 절차, 제4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에 대한 결과를 해당 재검토 요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토에 관한 사항은

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제33조제3항 중 "20일 이내"를 "30일 이내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30일 이내"를 "14일 이내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7항"을 "제8항"으로 한다.

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토에 관한 사항 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의신청 또는 재검토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, 제30조 및
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검토를 요
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	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	6
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	
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	
보받은 날부터 <u>10일 이내</u> 에 이	<u>30일 이내</u>
의신청을 할 수 있다.	
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	7
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	
터 <u>30일 이내</u> 에 관계자의 의견	<u>14</u> 일 이내
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	
하며,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	
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	
	
<u><신 설></u>	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
	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
	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
	<u> 따른다.</u>
⑧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기	<u>⑨</u>
준,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	
구성·운영 <u>및 제6항에 따른</u>	<u>등에 필요한 사항은</u>
<u>이의신청 절차는</u> 대통령령으로	
정한다.	

제30조(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30조(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) ①·② (생 제도 개선의 권고) ①·② (현 량) 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 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u>④</u> (생 략)

⑤ 제1항에 따른 권고 방법 및

100-100-100-100-100-100-100-100-100-100
제도 개선의 권고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
<u>그</u> 권
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
소관
④ 제3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
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
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
4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에 대
한 결과를 해당 재검토 요청을
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재검토에 관한 사항
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
<u> 따른다.</u>
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⑦</u>

절차,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절-----제6항----차, 제4항에 따른 확인·점검-------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(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 저 토 요청 등) ①·② (생 략)

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 처분의 내용(이하 이 조에서 "통지내용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 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 부터 <u>30일 이내</u>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 다.

⑥ (생 략)

<신 설>

제33조(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
토 요청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
<u>♦</u>
③
30일 이
<u> </u>
④ (현행과 같음)
⑤
<u>14일 이내</u>
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토에 관
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

$\overline{(7)}$	(생	략)
\mathbf{U}	(0	-1/

8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· 운영,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 차, <u>제7항</u>에 따른 등록 및 공개 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<u>6</u> 조에 따른다.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<u> </u>
<u>제8항</u>